

製造物責任에 관한 最近의 리스테인먼트 改正*

朴

薰**

I. 序 說

1998년 4월 9일 정부는 98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하면서 製造物責任法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2년에 製造物責任法案(議案 231號)이 제110회 임시국회에 제안, 상정되었던 것에서 보듯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1982년 제조물책임법안은 제3조에서 製造者의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올 것인가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에 기존의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을 가지고는 消費者의 제조물에 의한 피해구제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消費者에게는 일정한 權利를, 製造者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義務를 부과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자에게 제조물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항상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조자가 그러한 책임을 질 우려 때문에 필요한 제조물의 생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책임을 짐으로써 생산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친 소비자 위주의 제조물책임에 대해 수정을 가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우리가 여태껏 수출지향의 경제 즉 국내제조자를 우대해 주는 체제하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消費者도 생각하는 쪽으로 사고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자는 주장은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소비자를 우선하는 사고가 중국적으로는 소비자에게 得이 아닌 失이 될 수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梁承圭 教授의 추천에 따라 게재한 것임.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助教.

도 있고 이점까지 고려한 미국의 製造物責任에 관한 最近의 리스테이트먼트 改正은 앞으로 우리 製造物責任法을 制定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97년 5월 20일에 確定된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不法行爲法 製造物責任編¹⁾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 제402조를 改正하게 된 理由와 그 經過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確定된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 제조물책임편의 條文을 概觀, 翻譯紹介하고자 한다.

II. 改正理由와 그 經過

미국에서는 1963년의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²⁾에서 嚴格責任의 법리가 적용되었고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65년에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 제402A조³⁾에서 엄격책임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책임론은 미국 제조물책임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 소비자 보호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EC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입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 걸친 두차례의 이른바 製造物責任危機 내지 保險危機를 맞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엄격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제402A조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⁴⁾

이에 따라 헨더슨교수와 투위스키교수는 그 동안의 제조물책임판례를 분석하여 製造上의 缺陷에 대하여는 嚴格責任을, 設計上의 缺陷과 警告上의 缺陷에 대해서는 過失責任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改正案⁵⁾을 기초하기에 이르렀다. 이 두사람은 ALI(American Law Institute: 美國法律協會)⁶⁾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 起草者로서 이들이 작성한 개정안은 ALI의 製造物責任法部會에 보고되었으며(1992

1)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as adopted and promulgated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at Washington, D.C., May 20, 1997, tables and index—*,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98.

2)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0 Cal.2d 57, 377 P.2d 897(693).

3) Restatement of Torts, 2nd(1965) §402A Rule.

4) 1976년 미국 연방정부가 정부의 관련부처간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제조물책임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해 연구를 한 것이 제조물책임의 위기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여러 차례의 법안이 나오게 되었고, 최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 개정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5) James A. Henderson, Jr. & Aaron D. Twerski, "A Proposed Revision of Section 402 A of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77 *Cornell L. Rev.* 1512(September, 1992), pp. 1514-1526.

6) 미국법의 간명화, 보다 나은 사법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1923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구성원으로는 판사, 변호사, 법대교수 중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그 수가 2,000여명에 이른다. 미국판례법의 실제상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리스테이트먼트의 편찬이 그 대표적 사업이다. [<http://www.ali.org/ali/thisali.htm> 참조]

년 5월), 이 안이 대부분 수용되어 동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臨時案 (Tentative Draft)⁷⁾으로 발표되었다(1994년 4월 12일). 同案은 1994년 6월에 개최된 ALI 年次總會에서 심의되었으나, ATLA(Association of Trial Lawyers of America: 法廷辯護士協會)의 반대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음 총회(1995년)로 넘겨졌다. 하지만 1995년⁸⁾과 1996년⁹⁾ 연차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74차 연차총회에서는 승인을 받게 되어 1997년 5월에 확정되기에 이르렀다.¹⁰⁾

III. 改正內容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 제조물책임편은 條文은 4장, 21개조로 되어 있고¹¹⁾ 조문외에 解說(Comment)과 起草者의 註解(Reporter's Note)가 덧붙여져 있다. 조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賣渡時 製造物缺陷에 대한 責任을 다루고 있다. 제1조 내지 제4조를 포함하는 제1절에서는 제조물에 一般的으로 적용되는 책임원칙을 다루었다. 이중 제2조 b항은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문으로 製造物의 設計上의 缺陷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缺陷判斷基準로서 과실기준과 전통적으로 관련된 危險-效用基準(risk-utility test)을 채택하였다.¹²⁾ 제5조 내지 제8조를 포함하는 제2절에서는 부품,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 및

7)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s Liability, Tentative Draft NO. 1(April 12, 1994). 이 제1 임시안까지의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韓瑋熙, “미국 製造物責任法의 새로운 展開—미국 不法行爲法 리스테이트먼트 第402 A 條 제3차 改正案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제19권 제1호(1996.6), 124면 이하 참조.

8)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s Liability, Tentative Draft NO. 2 (March 13, 1995).

9)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s Liability, Tentative Draft NO. 3 (April 5, 1996).

10)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s Liability, Proposed Final Draft(April 1, 1997)”는 1997년 연차총회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걸쳐 확정된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 제조물책임편을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James A. Henderson, Jr., “Restatement Third, Torts: Products Liability: What Hath the ALI Wrought?,” *64 Defense Counsel Journal* 501(October, 1997), p. 501; “The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s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s Liability,” American Law Institute Press Release(May 26, 1998) 참조]

11) 제조물책임에서는 懲罰的 損害賠償이 문제될 수 있는데 위 리스테이트먼트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제조물책임법하에서만 고유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James A. Henderson, Jr., *op. cit.*, p. 501]

12) James A. Henderson, Jr., *op. cit.*, pp. 502-503.

의료기구, 식품, 중고품 등 特殊한 製造物에 적용되는 책임원칙을 다루었다.

제2장은 제9조 내지 제11조를 포함하며 여기에서는 매도시 제조물결합이외의 사유로 인한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賣渡時 不實表示와 賣渡後 警告와 製造物의 回收에 관한 責任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제3장은 제12조 내지 제14조를 포함하며 여기에서는 讓受人과 表見製造者의 責任을 다룬다.

제4장은 제조물이 통상의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그리고 결함이 매도시의 것이든 매도후의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두에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적극적 항변, 그리고 중요개념의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제15조 내지 제16조를 포함한 제1절에서는 因果關係를, 제17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한 제2절에서는 積極的 抗辯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이 리스트이트먼트에서 중요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製造物(product: 제19조), 商事賣渡人(commercial product seller: 제20조), 디스트리뷰터(commercial nonsale product distributor: 제20조), 身體나 財産에 대한 損害(harm to persons or property: 제21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IV. 條文翻譯

第1章 賣渡時 製造物 缺陷¹³⁾에 의한 商事賣渡人의 責任

第1節 製造物責任 總則

第1條 【商事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¹⁴⁾의 製造物 缺陷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13)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있어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고 할 때의 “하자”와 위의 “defect”가 동일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defect”는 “缺陷”으로 번역한다. 이러한 용어선택에 있어서의 고민은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1977. 6. 4, 조선대학교)에서의 李英秀 판사 발표에 잘 나타나 있다. [韓瑋熙, 製造物責任法論, 大旺社, 1997, 557-558면 참조]
- 14) 현행법령에는 “Distributor”에 해당하는 적절한 譯語가 보이지 않는다. 판례 중 자동차 판매방식의 일종으로서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방식에 대해 다룬 것이 있다(大判 1993.12.7, 93누17881(공보 961,43)). 이 판례에서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란 외국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하되, 국내에서의 판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1) 판매할 자동차의 전시 및 그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고객에 판매할 자동차에 대한 보증, 유지, 수리 등 판매 후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디스트리뷰터는 이 리스트이트먼트 제20조 a항의 商事賣渡人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적절한 역어가 없어 이하에서는 “디스트리뷰터”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는 어디까지나 이 리스트이트먼트 제20조 b항에 따른다.

製造物の 賣渡나 配分을 營業으로 하는 者は 缺陷있는 製造物を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경우 그 缺陷으로 인한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2條 【製造物 缺陷의 類型】

製造物 缺陷에는 製造上의 缺陷, 設計上의 缺陷, 그리고 不適切한 指示나 警告에 의한 缺陷이 있다.

- (a) 製造上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物の 마케팅¹⁵⁾에서 可能한 모든 注意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製造物이 設計와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缺陷을 말한다.
- (b) 設計上의 缺陷이라 함은, 賣渡人, 디스트리뷰터 또는 배분이라는 流通過程에서의 讓渡人이 合理的인 代替設計의 選擇을 하였다면 製造物로 인한 損害發生이라는 豫見되는 危險을 回避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代替設計를 選擇하지 아니하여 製造物이 相當히 安全하지 아니한 경우의 缺陷을 말한다.
- (c) 不適切한 指示나 警告에 의한 缺陷이라 함은, 賣渡人, 디스트리뷰터 또는 배분이라는 流通過程에서의 讓渡人이 合理的인 指示나 警告를 하였다면 製造物로 인한 損害發生이라는 豫見되는 危險을 回避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指示나 警告를 하지 아니하여 製造物이 相當히 安全하지 아니한 경우의 缺陷을 말한다.

第3條 【製造物 缺陷의 推定】

原告가 어떤 類型의 製造物 缺陷인지를 立證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損害가 賣渡나 配分時 製造物 缺陷으로 인하여 發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 (a) 損害가 通常의으로 본다면 製造物 缺陷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경우
- (b) 損害가 賣渡나 配分時 製造物 缺陷이 아닌 다른 原因에 의하여 發生한 것이라고 主張될 때 原告가 그 다른 原因에 의해서만은 發生할 수 없다는 것을 立證하는 경우

第4條 【製造物 安全에 관한 法律 및 規則의 違反 또는 遵守】

缺陷있는 設計나 不充分的 指示 또는 警告에 대한 責任과 관련하여:

- (a) 製造物이 製造物 安全에 관한 法律 및 規則에 違反된 경우 그 製造物은 安全에 관한 法律 및 規則이 意圖하는 危險減少와 관련하여 缺陷이 있다.
- (b) 製造物이 製造物 安全에 관한 法律 및 規則에 따른 경우에는, 이를 安全에

15) 현행법령에는 “marketing”에 해당하는 적절한 譯語가 보이지 않는다. “시장거래”나 “시장관리”라는 표현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일상적으로 제조계획에서 최종판매까지의 전과정을 가리키는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

관한 法律 및 規則이 意圖하는 危險減少와 관련하여 缺陷 有無의 判斷에 있어 적절히 考慮한다. 다만 法律上 製造物 缺陷의 事實認定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第2節 特殊한 製造物 또는 製造物市場에 適用되는 責任

第5條 【部品 商事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부품이 組立된 製造物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부품의 賣渡나 配分을 營業으로 하는 者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품이 組立된 製造物로 인한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a) 부품이 이 章에 規定한 缺陷이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경우
- (b) (1) 부품 商事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부품을 製造物의 設計에 따라 組立하는 데 實質적으로 參與하고
(2) 그 부품의 組立으로 製造物이 이 章에 規定한 缺陷이 있고
(3) 그 缺陷으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경우

第6條 【商事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處方箋이 있는 醫藥品 및 醫療器具의 缺陷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a) 缺陷있는 處方箋이 있는 醫藥品 및 醫療器具를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製造者는 그 缺陷으로 인한 身體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處方箋이 있는 醫藥品 및 醫療器具는 醫療提供者의 處方에 따르는 경우에만 合法的으로 賣渡하거나 配分할 수 있다.

(b) a항에 規定한 責任을 인정함에 있어 賣渡나 配分時 處方箋이 있는 醫藥品 및 醫療器具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醫藥品 및 醫療器具는 缺陷이 있다.

- (1) 제2조 a항에 規定한 製造上의 缺陷이 있는 경우
- (2) c항이 規定한 設計上의 缺陷으로 인하여 相當히 安全하지 아니한 경우
- (3) d항이 規定한 不充分한 指示 또는 警告로 인하여 相當히 安全하지 아니한 경우

(c) 處方箋이 있는 醫藥品 및 醫療器具는, 損害發生이라는 豫見되는 危險이 豫見되는 治療利益보다 상당히 커서 이를 알고 있는 通常의 醫療提供者라면 어떠한 類型의 患者에 대해서도 이것을 處方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設計上의 缺陷으로 인하여 相當히 安全하지 아니한다.

(d) 處方箋이 있는 醫藥品 및 醫療器具는, 豫見 가능한 損害發生의 危險과 관련된 合理的인 指示 또는 警告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아

니한 경우에는, 不充分한 指示나 警告에 의해 相當히 安全하지 아니한다.

- (1) 指示 또는 警告에 따라 損害發生이라는 危險을 減少시킬 地位에 있는 處方者와 다른 醫療提供者
 - (2) 指示 또는 警告에 따라 醫療提供者가 損害發生이라는 危險을 減少시킬 수 없다는 것을 製造者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경우의 그 患者
- (e) 處方箋이 있는 醫藥品 및 醫療器具의 小賣商이나 디스트리뷰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醫藥品 및 醫療器具로 인하여 損害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 (1) 賣渡나 配分時에 醫藥品 및 醫療器具가 제2조 a항에 規定한 製造上의 缺陷이 있는 경우
- (2) 醫藥品 및 醫療器具의 賣渡나 配分時 또는 그 以前에 小賣商이나 디스트리뷰터가 相當한 注意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身體上 損害가 發生한 경우

第7條 【商事賣渡人이나 디스트리뷰터의 食品의 缺陷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食品을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것을 營業으로 하는 者는 제2조, 제3조, 제4조에 規定한 缺陷있는 食品을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경우 그 缺陷으로 인하여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損害를 일으키는 食品의 成分은, 通常의 消費者가 食品에 그 成分이 들어 있을 것을 豫見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a항에 規定한 缺陷이 있다.

第8條 【商事賣渡人이나 디스트리뷰터의 中古品の 缺陷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中古品을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것을 營業으로 하는 者는 缺陷있는 中古品을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缺陷으로 인하여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a) 賣渡人이 相當한 注意를 하지 못하여 發生한 경우
- (b) 제2조 a항에 規定한 製造上의 缺陷이 있거나 제3조에 의하여 缺陷이 推定되고, 商事賣渡人의 마케팅으로 인하여 通常의 買受人이라면 中古品이 新品에 상응하는 缺陷만이 있을 것으로 期待하였을 경우
- (c) 商事賣渡人이나 中古品 流通過程에서의 讓渡人에 의하여 改造된 中古品에 제2조 내지 제3조에 規定한 缺陷이 있는 경우
- (d) 中古品이 適用되는 製造物 安全에 관한 法律 및 規則에 違反하여 제4조에 規定한 缺陷이 있는 경우

中古品이라 함은 이 條에서의 賣渡나 配분이 있기 이전에 당해 製造物의 流過程

에 있지 아니한 買受人에게 商業적으로 賣渡되거나 配分되고 一定期間동안 使用된 製造物을 말한다.

第2章 賣渡時 製造物 缺陷에 의하지 아니한 商事賣渡人의 責任

第9條 【商事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製造物 不實表示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製造物의 賣渡나 配分을 營業으로 하는 者는 製造物의 賣渡時 製造物의 重要部分에 대하여 詐欺, 過失 또는 善意의 不實表示을 하는 경우 그 不實表示로 인한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10條 【商事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賣渡後 警告의 失敗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a) 製造物의 賣渡나 配分을 營業으로 하는 者는 通常의 賣渡人이라면 警告를 하였을 경우 製造物의 賣渡나 配分 以後 警告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b) 通常의 賣渡人은 다음 각호의 事實이 있는 때에는 賣渡後에 警告를 하여야 한다.

- (1) 賣渡人이 製造物이 身體나 財産에 대하여 損害發生의 重大한 危險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2) 警告受領者가 確認될 수 있어야 하고 그가 損害發生의 危險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推定될 것
- (3) 警告가 警告受領者에게 效果的으로 傳達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을 것
- (4) 損害發生의 危險이 警告의 提供義務를 正當化하기에 충분히 클 것

第11條 【商事賣渡人이나 디스트리뷰터의 製造物 回收의 失敗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製造物의 賣渡나 配分을 營業으로 하는 者는 다음 각항의 事實이 있는 때에는 製造物의 賣渡나 配分 以後 製造物 回收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a) (1) 法律 또는 規則에 따라 발동된 政府行爲가 特別히 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에게 製造物을 回收할 것을 要求하거나

(2) 제1호에 의하여 回收의 要件이 없는 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製造物의 回收를 約束하였을 것

(b) 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製造物을 回收함에 있어 通常人으로서 行爲하

지 못하였을 것

第3章 讓受人과 表見製造者의 責任

第12條 【讓渡人이 賣渡한 製造物의 缺陷에 대한 讓受人의 損害賠償責任】

讓渡人인 會社나 事業體의 資産을 取得한 讓受人인 會社나 事業體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賣渡나 配分한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한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a) 契約에 의하여 讓受人이 그와 같은 責任을 지기로 한 경우
- (b) 讓渡人의 債務를 免할 目的으로 虛偽의 讓渡를 한 경우
- (c) 讓渡人과 新設合併 또는 吸收合併을 한 경우
- (d) 讓渡人이 讓受人의 營業을 繼續한 경우

第13條 【賣渡後 警告의 失敗에 대한 讓受人의 損害賠償責任】

(a) 讓渡人인 會社나 事業體의 資産을 取得한 讓受人인 會社나 事業體는, 제12조에 의한 責任의 認定與否와 상관없이, 다음 각호의 事實이 있는 때에는 警告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身體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1) 讓受人이 製造物의 維持補修用役 提供을 着手 또는 同意하거나, 그에게 實際的 또는 潛在的인 經濟的 利益을 주는 讓渡人 製造物의 買受人과 이와 類似한 法律關係를 맺을 것

(2) 通常의 讓受人이라면 警告를 하였을 것

(b) 通常의 讓受人이라면 다음 각호의 事實이 있는 때에는 警告를 하여야 한다.

(1) 賣渡人이 製造物이 身體나 財産에 대하여 損害發生의 重大한 危險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2) 警告受領者가 確認될 수 있어야 하고 그가 損害發生의 危險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推定될 것

(3) 警告가 警告受領者에게 效果的으로 傳達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을 것

(4) 損害發生의 危險이 警告提供의 義務를 正當化하기에 충분히 클 것

第14條 【他人이 製造한 製造物을 自身の 것으로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경우】¹⁶⁾

製造物을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것을 營業으로 하는 者는 他人이 製造한 製造物을 自身の 것으로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경우 그 製造物의 製造者와 同一한 責任이 있

16) 表見製造者의 責任에 관한 規定이다.

다.

第4章 一般適用規定

第1節 因果關係

第15條【製造物 缺陷과 損害사이의 因果關係에 관한 一般原則】

製造物 缺陷이 身體나 財産에 대해 損害를 發生시켰느냐 아니냐는 不法行爲에 있어서 因果關係를 규율하는 支配的인 規則 및 原則에 의하여 결정된다.

第16條【製造物 缺陷으로 인한 擴大損害】

(a) 製造物이 賣渡 또는 配分時에 缺陷이 있고 그 缺陷이 原告의 損害를 擴大시키는 데 다른 原因보다 重大한 要素인 경우 賣渡人은 그 擴大損害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b) 製造物 缺陷이 없더라도 다른 原因에 의해 損害가 發生하였을 것을 立證한 경우에는 賣渡人의 責任은 製造物 缺陷으로만 생긴 擴大損害로 制限된다.

(c) b항에서 製造物 缺陷이 없더라도 損害가 發生하였을 것을 立證하지 못하는 경우 賣渡人은 缺陷과는 다른 原因으로 생긴 原告의 모든 損害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d) b항에 의하여 原告의 損害 一部에 대하여 責任이 있거나 c항에 의하여 原告의 損害 全部에 대하여 責任이 있는 缺陷있는 製造物의 賣渡人은, 連帶責任이 適用되는 規則에 따라 損害에 대하여 法的 責任을 지는 다른 當事者와 함께 連帶責任을 지거나 個別責任을 진다.

第2節 積極的 抗辯

第17條【原告, 缺陷있는 製造物의 賣渡人과 디스트리뷰터 등의 責任分配】

(a) 原告의 行爲가 製造物 缺陷과 結合하여 損害를 發生시키고 原告의 行爲가 通常의 注意義務를 規定한 一般的으로 適用되는 規則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製造物 缺陷에 대한 原告의 損害賠償額을 減額한다.

(b) a항에서 規定한 減額의 方法과 程度, 그리고 被告들 사이의 原告의 損害賠償額 配分은 責任分配에 있어 一般的으로 適用되는 規則에 따른다.

第18條【身體上 損害에 대한 製造物損害賠償請求의 抗辯인 責任免除, 責任制限, 權

利拋棄 및 其他 契約上의 免責】

製造物 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에 의한 責任의 免除와 制限, 製造物 買受人의 權利拋棄, 其他 契約上의 免責이 口頭나 書面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新品의 賣渡人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상대로 한 身體上 損害에 기한 製造物損害賠償의 請求가 禁止되거나 그 配當額이 減額되지 아니한다.

第3節 定 義

第19條 【“製造物”의 定義】

이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사용하는 “製造物”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a) “製造物”이라 함은 使用 또는 消費를 위하여 商業적으로 流通되는 有形動産을 말한다. 不動産, 電氣 其他 유형동산이 아닌 物件이라도, 이의 配分과 使用이 有形動産의 경우와 類似하여 이 리스테이트먼트상의 規則을 適用하는 것이 妥當한 경우에는 製造物로 본다.
- (b) 서비스는 商業적으로 提供되는 경우에도 製造物로 보지 아니한다.
- (c) 血液과 人體組織은 商業적으로 提供되는 경우에도 이 리스테이트먼트상의 規則이 適用되지 아니한다.

第20條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者”의 定義】

이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사용하는 “賣渡하거나 配分하는 者”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a) “賣渡”라 함은 商業적으로 使用 또는 消費하기 위한 것이든 최종 사용 또는 소비 이전의 都賣하기 위한 것이든 製造物의 所有權을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商事賣渡人”이라 함은 製造者, 都賣商, 小賣商 등을 말한다.
- (b) “配分”이라 함은 賣渡이외의 商去來에 있어 他人의 使用 또는 消費하기 위한 것이든 최종 사용 또는 소비 이전의 前段階로 한 것이든 製造物을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디스트리뷰터”라 함은 賃貸人, 委託者 그리고 製造物의 使用, 消費 기타 商行爲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他人에게 製造物을 提供하는 者 등을 말한다.
- (c) 商去來에 있어 製造物과 用役을 그 全體로서 또는 製造物 部品으로 提供하는 것이 a항 내지 b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製造物을 賣渡하거나 配分한 것으로 본다.

第21條 【“身體나 財産에 대한 損害”의 定義: 經濟的 損失에 대한 損害賠償】

이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身體나 財産에 대한 損害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경우에는 經濟的 損失을 包含한다.

(a) 原告

(b) 他人에 대한 損害로 인하여 不法行爲法에 의하여 保護되는 原告의 利益이 侵害된 경우 그 他人

(c) 缺陷있는 製造物 自體 이외의 原告의 財産